[참조] 시행규정의 내용

□ 시행규정

○ 시장·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시행규정에는 다음의 사항 중 해당 주택재건축사업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」 제41조제1항).

- 재건축사업의 명칭
- 재건축사업의 시행연도 및 시행방법
- 비용부담 및 회계에 관한 사항
- 토지 등 소유자의 권리·의무에 관한 사항
-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부담에 관한 사항
- 공고·공람 및 통지의 방법
-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
- 관리처분계획 및 청산(분할징수 또는 납입에 관한 사항 포함)에 관한 사항
- 시행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
- 사업시행계획서의 변경에 관한 사항
- 그 밖에 시·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